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641 발의연월일: 2020. 11. 23.

발 의 자:김상훈·김석기·장제원

한무경 · 서병수 · 윤두현

김영식 · 하태경 · 최춘식

태영호 · 조수진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열람 제한 신청을 같은 세대원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주민등록 열람 및 교부 제한 신청을 했더라도 이해관계자임이 증명되는 경우 피해자의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.

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는 그 부모, 형제 등 직계가족과 접촉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가해자가 이해관계자 자격으로 열람을 허용하게 되 면 거주지 정보가 쉽게 노출되어 2차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.

이에 가정폭력피해자가 특정 대상자에 대한 주민등록 열람·교부 제한 신청 시 본인과 세대원 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교부를 제한하고자 함. 또한 이해관계 등을 내세우더라도, 가정폭 력 가해자일 경우 주민등록 발급기관이 피해자의 주소지 정보의 발급 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하고자 함(안 제29조제6항, 제29조제 8항 신설). 법률 제 호
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6항 중 "제2항제5호"를 "제2항제5호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"로, "세대원"을 "세대원 및 직계존비속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항에 따른 제한대상자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·초본교부기관의 장은 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할 수있다.

부 칙

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정 혅 행 개 아 제29조(열람 또는 등·초본의 교 제29조(열람 또는 등·초본의 교 부) ① ~ ⑤ (생 략) 부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5호 에 따른 피해자(이하 이 조에 서 "가정폭력피해자"라 한다)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 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 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 -----제2항제 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호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--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 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 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 는 등·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 대원 및 직계존비속----록 신청할 수 있다. (7) (현행과 같음) ⑦ (생략)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항 <신 설> 에 따른 제한대상자가 가정폭 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한 경우 에는 등·초본교부기관의 장은 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

	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<u>⑧</u> · <u>⑨</u> (생 략)	<u>⑨·⑩</u> (현행 제8항 및 제9항
	과 같음)